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구분	내용	
최고금리	연 3.3%	- 기본이율(연 0 ~ 1.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 우대이율(연 1.5%p)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본인 무주택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자세한 우대이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납입기간	가입(전환)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속 납입 가능)	
적립 방법 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을 경과하여 입금 시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일부해지	X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예금담보대출	O	가능
예금자보호	X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세제혜택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에서 정하는 세부사항(대상, 요건, 범위 등) 충족 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 500만원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 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상이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 불가	

●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자계산방식 [세전]	$\text{월저축금} \times \text{약정이율} \times \text{일수(입금일 ~ 해지전일)} / 365$ <p>1회차 2회차 3회차 ... 마지막 회차 해지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저축금X약정이율X일수/365 월저축금X약정이율X일수/365 월저축금X약정이율X일수/365 ... 월저축금X약정이율X일수/365
중도해지이율	별도 정하지 않음(가입기간별 약정금리 적용)
예금만기	별도 만기 없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이전/해지 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2021. 01. 01. 현재)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거주지역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입자격 (전환신규 포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u>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u>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인 자로서 <u>다음 ①, ②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u>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를 따름]
-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신규)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세대주인 자
 -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계좌 해지 전까지 동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
- ② 가입(전환신규)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함)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나.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 단,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① 필수 제출서류

가.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나. 소득 확인서류 : 연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구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기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위 기본 서류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으며 1년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기본서류로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서류
(전환신규 포함)

-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6월 가입 시 전전년도 서류로 제출 가능
- ※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급여명세표」인 경우 [(총 수입금액 ÷ 소득 발생 개월 수)×12]로 연환산하여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의 직인날인 필수임
- ※ 가입(전환)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p>다. 세대주 관련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전환신규) 시 필수 제출하되, 가입자격 ①요건의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계좌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 해지 전까지 미제출 시 우대이율 적용 제외 <p>②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p> <p>가. 무주택 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 재산세 세목, 전국 자치단체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격 ①요건의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각각의 서류 모두 제출(가입 시 본인의 무주택확인은 ‘각서(청년우대형 가입용)’ 징구로 같음) ☞ ‘주민센터 발급분’ 가능(인터넷발급분 제외)하며,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p>나. 비과세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제출 (단, 부득이하게 가입(전환신규) 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신규)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 비과세 신청 대상자는 본 상품설명서의 “비과세” 항목 참조 <p>다. 병역기간 확인서류: 병적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p>가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입(전환신규 포함)이 가능함
<p>가입기간</p>	<p>2021.12.31 까지 가입가능 (전환신규 포함)</p>
<p>저축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원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p>납입기간</p>	<p>가입일(또는 전환신규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속 납입 가능</p>																
<p>적용이자율</p>	<p>▪ 기본이율에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1.5%p) 추가하여 적용</p> <p>① 기본이율(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2020.07.31 기준 세금공제 전, 단리식)</p> <table border="1" data-bbox="475 533 1418 788"> <thead> <tr> <th>가입기간</th> <th>기본이율</th> </tr> </thead> <tbody> <tr> <td>1 개월 이내</td> <td>무이자</td> </tr> <tr> <td>1 개월 초과 1 년 미만</td> <td>연 1.0%</td> </tr> <tr> <td>1 년 이상 2 년 미만</td> <td>연 1.5%</td> </tr> <tr> <td>2 년 이상</td> <td>연 1.8%</td> </tr> </tbody> </table> <p>※ 변동금리로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를 적용 ※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해약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p> <p>② 우대이율 (연 1.5%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2 년 이상 유지한 계좌 (단, 당첨계좌에 한해 2 년 미만인 경우 포함)이고,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가입자 본인의 무주택기간 이 연속하여 있는 경우 - 적용원금 : 납입원금 5 천만원 한도 (단, 전환신규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적용기간 :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최대 10 년까지 적용 (단, 가입(전환신규) 후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초 주택취득일의 직전년도 말일(최대 10 년)까지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445 1319 1447 1680"> <thead> <tr> <th>적용대상</th> <th>우대이율 적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가입자 본인이 가입일부터 해약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경우</td> <td>가입(전환신규)일부터 최대 10 년까지</td> </tr> <tr> <td>가입자 본인이 가입일 당시 무주택자였으나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td> <td>가입(전환신규)일부터 주택취득일의 직전년도 말일 (가입일로부터 최대 10 년)까지</td> </tr> </tbody> </table> <p>※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신규) 후 1 개월 이내 해약 시 미적용</p> <p>▪ 우대이율 적용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격 ①요건의 “나” 자격(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상 3 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인 경우에는 계좌 해 지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동 세대주 요건 충족사실을 입증하여야 우대이율 적용대상에 포함됨 	가입기간	기본이율	1 개월 이내	무이자	1 개월 초과 1 년 미만	연 1.0%	1 년 이상 2 년 미만	연 1.5%	2 년 이상	연 1.8%	적용대상	우대이율 적용기간	가입자 본인이 가입일부터 해약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경우	가입(전환신규)일부터 최대 10 년까지	가입자 본인이 가입일 당시 무주택자였으나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전환신규)일부터 주택취득일의 직전년도 말일 (가입일로부터 최대 10 년)까지
가입기간	기본이율																
1 개월 이내	무이자																
1 개월 초과 1 년 미만	연 1.0%																
1 년 이상 2 년 미만	연 1.5%																
2 년 이상	연 1.8%																
적용대상	우대이율 적용기간																
가입자 본인이 가입일부터 해약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경우	가입(전환신규)일부터 최대 10 년까지																
가입자 본인이 가입일 당시 무주택자였으나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전환신규)일부터 주택취득일의 직전년도 말일 (가입일로부터 최대 10 년)까지																

	<p>- 가입자 본인의 주택 취득 여부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기간이 상이하며, 계좌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여부를 입증하여야 함</p> <p>※ 본 상품설명서의 “계좌의 해지” 항목 참조</p>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 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만기 후 이자율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적용세율	정상 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1.4%)) 임 ※ 세율은 2018.7.27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과세	<p>▪ 개요</p> <p>「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 만원 (납입금액 연 600 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p> <p>※ 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상이함</p> <p>▪ 대상요건</p> <p>가입(전환신규)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p> <p>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p> <p>가. 가입(전환신규)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나. 가입(전환신규)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 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② 가입(전환신규) 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하게 가입(전환)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p> <p>③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 및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특별해약은 2년 미만인 경우 포함)</p> <p>④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이 2,000 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②와 ④의 검증시기가 다르므로 모두 적격으로 확인시 비과세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 정부에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 제출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으로 검증된 자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 (부적격판정 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자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함) - 비과세 요건 부적격자라도 계좌 유지 시 주택청약 기능 등은 유지됨 (가입요건, 비과세 요건, 우대이율 요건 각각 상이) ※ 비과세 검증통보 및 소명방법 -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 제출일의 다음연도 2 월말에 국세청장이 은행에 검증결과 통보함 - 은행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부적격자에게 내용 안내 - 부적격통보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은행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서’(국세청 양식)를 제출해야 함(단,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 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은행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2 에 의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전환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불가) ▪ 전환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가입 - 전환신규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u>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u> - 전환해약일 현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미납 납입정보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멸함)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u>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됨</u>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동이체 정보는 모두 소멸하므로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 새로 신청하여야 함

	<p>- 약정납입일 이전에 전환해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당월(전환해약월)분 회차는 국민주택 청약용 납입회차로 인정되지 않음</p>
<p>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요건 (아래 자격 <u>모두</u>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1)}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 월말^{주 2)}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p>주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봄</p> <p>주 2) (예시) 2019 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2020 년 2 월 29 일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하여야 함</p> ▪ 무주택확인서 제출(소득공제 등록) 필요서류 <p>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은행서식</p> <p>※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에서 제출(소득공제 등록) 가능</p> ▪ 공제한도 <p>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40%공제 (최대 96 만원)</p> <p>※ 단,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하여 소득공제 한도 산정</p> ▪ 해지하는 경우 추징대상 (①,② 중 <u>하나</u>라도 해당 시) <p>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②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 제외)하는 경우 세금 추징</p> <p>※ 전환신규 계좌의 추징대상 요건은 전환신규일부터 산정함</p> ▪ 추징세율 <p>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누계액 × 6% (지방소득세 포함 6.6%)</p>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소득공제등록 해지)하여야 함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에서 가능) - 무주택 확인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계좌에 대해 별도 무주택 확인등록을 하여야 당해 과세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전환원금은 제외)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12.31 납입분 까지임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p>계좌부활</p>	<p>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계좌부활 가능</u></p>

	<p>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p> <p>②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p> <p>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p>
<p>계약의 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해지 불가) ▪ 가입기간과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이 다름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발급분” 가능(인터넷발급분 제외),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가입(전환)일부터 해지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발급 - 주택 소유여부 및 취득시기는 ‘재산세(주택)’ 부과시기로 판단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명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통장 해지 전 직접 입증하여야 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과세 관련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을 따르며,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하여 적격으로 판정 시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비과세 신청자 중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2년 이상인 계좌를 정부의 비과세 검증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전환신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제출하여 비과세 자격이 증빙되는 경우 적용 가능 (해지 시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한해 제출 가능) <p>※ 자세한 비과세 적용 요건 등은 본 상품설명서의 “비과세” 항목 참조</p>
<p>예금자보호 여부</p>	<p>해당사항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보증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p>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가입일로 변경됨)
-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 약정납입일(신규가입/전환신규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가 산정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 1회차 이상,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을 경과하여 납입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통장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명의변경 가능)
- 명의변경한 계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무주택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점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발생 이자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해당 예금의 일부인출 또는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한해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 비과세 관련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따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위탁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참고

무주택 해석례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다음 아래에서 무주택 해석례를 정한 경우 그 해석례

를 따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례]

1. 규칙 제53조 중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는 해석례에 따르고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2. 규칙 제53조 중 분양권등(규칙 제2조제4호에서 규정)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해석)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해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한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해석)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의 경우 동호 적용 배제 (주택소유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해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을 완료한 경우, 2) 주택이 멸실된 경우, 3)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 정리를 완료한 경우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해석)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해석) 분양권등의 소유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